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5호, 2021. 10. 2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절의2, 제17조의2 신설)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9조의2 신설)

4.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절의2와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제1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등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u><신 설></u>	<u>제2절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u>
<u><신 설></u>	<p><u>제1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u></p> <p>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p> <p>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p>

제4장 수수료

<신 설>

④ 등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수료

제19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6043